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의안 번호	15174
----------	-------

요구연월일 : 2025. 12. 11.

요 구 자 : 박상혁 · 김남근 · 채현일
안태준 · 김문수 · 김동아
문진석 · 이기현 · 박용갑
허영 · 백승아 · 조인철
이성윤 · 박홍배 · 김현정
이주희 · 윤종균 · 이용우
김기표 · 전진숙 · 문금주
민병덕 의원(22인)

주 문

국회의원(나경원)을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 의제 외 발언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고, 발언대에서 피켓을 들고 발언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며 본회의장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음.

다. 국회의원 나경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에 나와 법안과 전혀 관련 없는 의제 외 발언을 하였음.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 내에서 무제한 토론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경고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나경원은 “법안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어야 합니까?”라 따지며, 국회의장의 지적·경고를 무시한 채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계속하였음. 이는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임.

라. 국회의원 나경원의 「국회법」 제102조 위반행위가 지속되자 국회의장이 발언대의 마이크를 끄는 등 회의장 질서 유지(「국회법」 제145조) 조치를 취했음에도 국회의원 광규택은 무선마이크를 가져와 국회의원 나경원 옷에 장착해주며 의제 외 발언을 계속하도록 부추기고, 국회의원 나경원은 심지어 불법 손피켓을 발언대에서 들고 의제 외 발언을 계속 이어갔음. 이는 「국회법」 제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마. 국회의원 나경원은 무제한 토론의 취지와 성격을 악용하여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홍보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국회 본회의장을 불법 유튜브 콘텐츠 공장 수준으로 격하시켰음. 또한 무제한 토론을 통해 본회의 의사 진행 자체를 마비시킴으로써 국회 질서를 유린하고, 국회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행태를 보임.

바. 무엇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59건은 국민의힘의 입법 방해 목적에 의한 무제한 토론 때문에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국민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나온 행태로 해당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정쟁적 목적을 갖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국민의힘 인질극의 허상과 민낮은 국민적 질타의 대상임.

사. 위와 같이 국회의원 나경원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